변화의 기회,

새로운 내일을 위한
든든한 지원

일생일대 취업이룸

2026년 당신의 시작을
국민취업지원제도가
함께합니다.

신청접수

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방문
(http://www.work.go.kr)

고용노동부

취업이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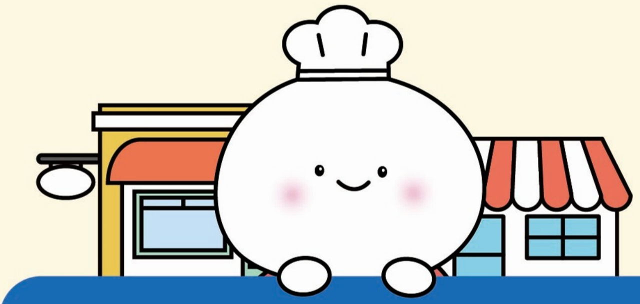

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

'26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을 수료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및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국민취업 연계수당* 추가 지급

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[II 유형] 청년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

직업훈련(1개월 이상)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(기업)에 취업,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최대 월 20만원씩 6개월분의 훈련참여지원 수당과 40만원의 성공수당 지급(소득 무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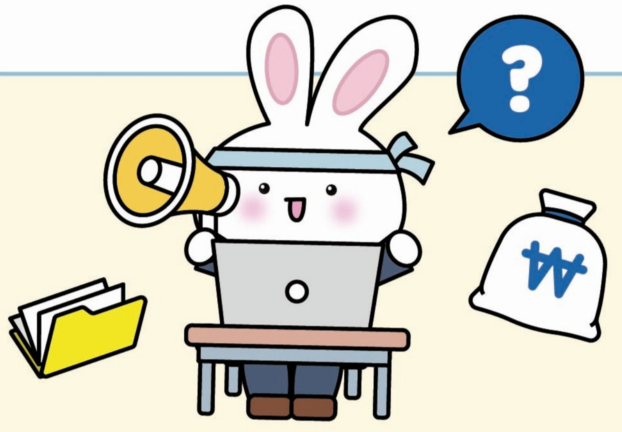

지원서비스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유형</th><th colspan="2">세부 지원내용</th></tr>
<tr><td>취업지원</td><td>공통</td><td colspan="2">-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 상담
-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
-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소득지원</td><td>I 유형</td><td colspan="2">- (구직촉진수당) 월 60만원 x 6개월 + 가족수당*
*미성년자(18세이하), 고령자(70세 이상), 중증 장애인 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II 유형</td><td>참여수당</td><td>참여장려수당</td></tr>
<tr><td>15~25만원(1회)</td><td>월 1회 2만원(5회)</td></tr>
<tr><td>공통</td><td colspan="2">- (취업성공수당) 6개월 근속시 50만원,
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(총 150만원)
*I·II 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, 특정계층(소득무관)</td></tr>
</table>

참여요건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2">I 유형</th><th colspan="3">II 유형</th></tr>
<tr><td>연령</td><td>15~69세</td><td>청년 15~34세</td><td>특정계층
15~69세</td><td>청년
15~34세</td><td>중장년
35~69세</td></tr>
<tr><td>소득</td><td>중위소득 60%이하</td><td>중위소득 120%이하</td><td colspan="2">무관</td><td>중위소득
100% 이하</td></tr>
<tr><td>재산</td><td>4억원 이하</td><td>5억원 이하</td><td colspan="3">무관</td></tr>
</table>

* (청년 15~34세)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

** (기본재산공제액) 서울시 9,900만원, 경기도 8,000만원, 광역시·세종·창원 7,700만원, 그 외 지역 5,300만원

***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, 청년 중 중위소득 60% 초과~120%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I 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
■ I 유형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

- 생계급여 수급자
- 실업급여·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상인 자

'26년 중위 소득 (단위 : 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
중위소득 60%	1,538,543	2,519,575	3,215,422	3,896,843	4,534,031
중위소득 100%	2,564,238	4,199,292	5,359,036	6,494,738	7,556,719
중위소득 120%	3,077,086	5,039,150	6,430,843	7,793,686	9,068,063

※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
▶ 가구원의 범위 : 신청인 본인,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(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)